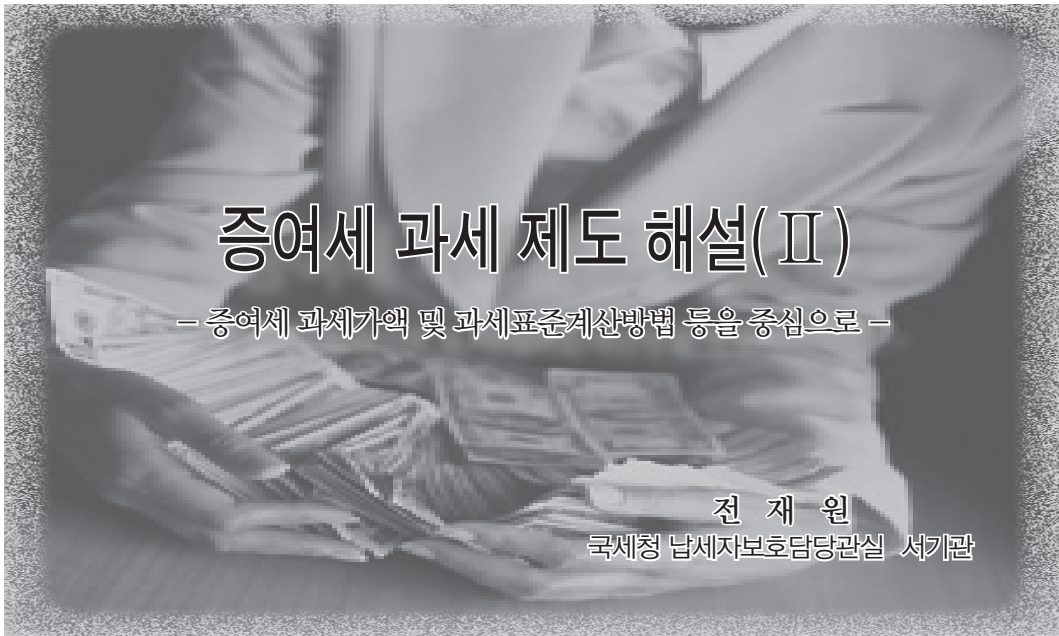




I. 머리말

이번호에서는 증여세 과세시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및 불산입, 과세표준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은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 원고에 사용된 용어의 해설]

○ 공익법인 등이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 발행주식총수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 성실공익법인 등이란 운용소득의 90%(2010. 2. 18.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공익법인 등의 범위

공익법인 등의 법인은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은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사



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부자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라.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바.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사.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아.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①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
- ② 소득세법시행령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과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 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 타.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 파.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하.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 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러.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 머.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2.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 고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공익법인 등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 제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산학협력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기 등을 출연받은 경우 아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를 초과여부를 판정한다.

- ① 출연받은 주식 등
- ②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 '특수관계자'란 출연자와 상속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출연시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예를 들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접수일이 출연시기이다.

3.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나, 다음 (1)~(6)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등 10%)를 초과하는 경우
-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된다.
- (5)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및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이 경우 무상사용·수익시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정상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시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4.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한한다) 등과 다음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 ②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 ④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 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III.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자가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이 증여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직접 출연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기 때문이다.

1. 공익신탁의 요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2. 공익신탁의 이행시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IV.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한도 5억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그 날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장애인의 범위

그 범위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추가공제)의 장애인 범위와 동일하다.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③ 그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가. 신탁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② 해당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나. 불산입 재산가액

해당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불산입 신고요건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②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증여세 추정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 ②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 ③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 ④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부득이한 경우는

- ①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 ②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이다.



V.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비과세,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및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금액 및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1. 증여재산가액

당해 증여일 전 10년(1998.12.31. 이전은 5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 10년 이내 계산

10년의 기간 계산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1999.1.1.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고,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것은 5년간 합산한다.

나.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

동일인이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나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예 : 부모, 조부모)인 경우에는 부와 모 또는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을 합산한다.

- 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생부의 증여재산에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가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그 후 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부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② 조부와 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당해 증여전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한다.

- ①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하여 합산한다.
- ②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증여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한다.
- ③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의제로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한다.
- ④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한다.
- 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합산한다.

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

- ①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산과세한다. 다만, 증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 증여재산인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②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감면된 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 ③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인 창업자금은 창업자금 외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 ④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인 가업승계 주식 등은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채 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한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당해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가.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제 인수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채무자 명의변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일 후 당해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되어야 한다.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시점에서 해당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일반 채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자 채무가 아닌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진으로 증여받더라도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VI.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 1. 이후 증여분부터

일반증여재산, 명의신탁재산,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과세표준을 계산(상속세및증여세법 § 55)하고 있다.

구 분	증여세 과세표준(2004.1.1. 이후)
일반증여재산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명의신탁 재산가액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 증여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범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 40①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 41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 41의5), 기타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 42④)

2003.12.31. 이전 증여 분은 증여재산 종류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19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합산하여 아래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2010.1.1. 이후 계부·계모 포함)	기타 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3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백만원)	5백만원	없음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증여재산이 합산배제 증여재산이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다.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해 증여추정으로 과세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가.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1) 증여재산공제액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2003.1.1.~2007.12.31. 증여분은 3억원, 2002.12.31. 이전 증여분은 5억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53-46-1)를 말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2)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아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종전 증여 합산시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나.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1) 증여재산공제액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공제한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민법 § 4)이면 1천5백만원만 공제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로 본다.

2010.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고, 직계비속의 범위에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재산 공제를 허용한다.

- (1)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 2명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각각 3천만원씩 공제(국세청 채삼46014-915, 1996.4.9.)한다.
- (2) 20세 미만인 자가 혼인하여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적용(국세청 재산상속46014-384, 2001.8.1.)한다.

2) 직계존비속 : 혈족을 말한다.

- (1)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 (3) 출양한 자의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 모두 해당한다.

다. 증여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인 경우

1)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한다.

- (1)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 친족에 해당한다.
- (2)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가 종중이거나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제되는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

-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⑤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⑥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 출양자는 입양자의 반대개념이다. 즉, 남의 집에 양자로 가 있는 자녀이다.
- ⑦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 ⑧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라.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수증자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러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한편 2006년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30의 5)가 적용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하며, 2008년부터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30의 6)가 적용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

2. 재해손실공제

타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재산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된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다만, 당해 손실금액에 대해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수증자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해당 손실가액 및 명세와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200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수료로 구분하며,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시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



료로서 당해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평가수수료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액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다.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